

의 회 질 문 답 변 서

□ 질문의원 : 임 호 성

□ 제 목 : 무장공비 침투관련 地域 商景氣 지원에 관한 對策등

[질문 및 답변서]

1. 現在까지 최종적으로 집계 確定된 업종별 被害額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 위 : 백만원)

계	어획감소	농산물	운수업	서비스업	제조업	도소매	비고
69,533	14,051	1,146	1,695	22,875	2,666	27,100	

2. 政府次元에서 피해 市·郡에대한 지원상황 및 각 市·군의 피해업체에 대한 支援計劃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춘 천	원 주	강 룡	동 해	태백	속 초	삼 척	홍 천
계	45,000	1,500	1,500	12,000	3,000	700	13,000	1,500	1,500
정부지원	30,000	1,500	1,500	7,000	3,000	700	3,000	1,500	1,500
시·군 자체지원	15,000			5,000			10,000		

횡 성	영 월	평 창	정 선	철원	화 천	양 구	인 제	고 성	양 양
700	700	1,500	700	700	700	1,500	800	1,500	1,500

3. 政府의 30억원 저리융자 지원에 따른 속초시민들의 신청액은
총 672건에 36,603백만원 이고, 業種別 洞別 신청액은 다음과
같습니다.

건 수
금 액

(단 위 : 백만원)

등 별	업 종 별								비고
	계	제조업	식 품 판매업	도. 소 매업	숙박업	운수업	식 유 판매업	기타업	
계	672 36,603	28 1,880	162 8,260	303 15,620	50 3,990	8 500	6 480	115 5,873	
영랑동	33 1,900	10 650	3 180	12 660			1 100	7 310	
동명동	37 2,025		9 500	15 755	4 260	1 90		8 420	
중앙동	87 5,855	3 155	21 1,025	51 3,755	2 140			10 780	
금호동	73 1,292		17 925	40 2,185	3 200	1 20	1 100	11 470	
청학동	71 3,165	4 220	15 565	40 1,880	5 300			7 200	
교 동	127 5,715	6 440	30 1,205	66 2,605	4 350		1 100	20 1,015	
노학동	41 2,608		19 1,320	8 500	3 250	2 150		9 388	
조양동	32 2,030		1 100	9 530	3 300	4 240	1 100	14 760	
청호동	12 650	2 100		6 290			2 80	2 80	
대포동	19 930	1 100	10 580	7 230				1 20	
도문동	7 490		2 200					5 290	
설악동	97 5,830		16 830	37 1,870	26 2,190			18 940	
장사동	36 1,505	2 115	19 830	12 360				3 200	

4. 束草市에서 10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알선에 따른 이자 일부를 負擔하는 계획과 그에 따른 財源對策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은행융자 11.5%中 업체부담 7%, 市에서 이자보전 4.5%인바 所要豫算은 450백만원 입니다.

○ 豫算對策은 제 1회추정에서 確保할 計劃입니다.

5. 向後 예측치 않은 해일, 냉해 등으로 被害가 發生될 때 4항의 방법으로 피해 市民들에게 혜택을 지원할 의지와 豫算의 뒷받침의 計劃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금번 업체에 대한 지원은 中央政府에서 무장공비 침투에 따라 정책적 배려에 의해 지원되어 中央支援分 가지고는 턱없이 不足하여, 地方自治團體로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追加支援이 불가피 하였음.

○ 해일과 냉해 등은 災害對策法 및 農漁業災害法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사항입니다.

자료번호		소관부서	도 시 과	질문의원	신	철
------	--	------	-------	------	---	---

【 질문요지 】

○. 택지개발지구내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하여,

1. 지역별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건축된 주상복합건물 현황('97. 1. 20. 현재)
2.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무단용도변경행위 단속결과 및 행정조치실적('96. 1월 이후)
3. 불법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 및 부과액.

【 답변내용 】

○. 신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지구내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답변을 드립니다.

1. 지역별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건축된 주상복합건축물 현황에 대하여

구 분	계	'94. 이전	'95.	'96.	'97.
계	111	30	34	46	1
만천택지개발지구	21	14	3	4	-
교동(3)택지개발지구	49	8	16	24	1
청초택지개발지구	24	6	5	13	-
조양택지개발지구	17	2	10	5	-

2.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무단용도변경행위 단속결과 및 행정조치 실적에 대하여('96. 1월 이후)

- 무단용도변경행위 단속결과

구 분	무단용도변경 적발건수	비 고
계	54	
만천택지개발지구	4	
교동(3)택지개발지구	32	
청초택지개발지구	14	
조양택지개발지구	4	

- 행정조치 실적에 대하여

-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무단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 규정에 의한 조치대상이 아니며,
- 택지개발지구내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나, 실질적인 처벌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.

3. 불법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 및 부과액에 대하여

- 택지개발지구내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.

市政質問事項 書面答辯書

질문의원	임 호 성	소 속	전 설 과
답 변 자	전 설 과 장	일 자	질 문 : 1997. 2. . 답 변 : 1997. 2. .
회 의			

〈질문요지〉

- 송배전선로 지중화계획관련 도로확장계획
 - 도로확장공사 지연시 지중화공사도 지연이 불가피한바
 - 도로확장계획에 대한 구상은 ?

〈답변내용〉

- 속초 - 간성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영북지역의 전력부족과 저전압 문제 해소와 속초 - 간성 - 인제 상남의 송전선로 연계를 위해 지난해에 추진한 사업으로
- 본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속초시 의회, 속초 환경연합이 송전철탑 건립반대 진정·건의에 따라 한전측에서는 속초시에서 관련도로 확장사업이 추진되면 동 선로를 지중화하겠다는 약속을 하므로써 송전선로 지중화계획관련 도로확장사업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
- 한전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관련도로 확장사업 추진대상은 한전변전소 - 노학동사무소 - 척산로 - 척산3거리 - 한화4거리 - 속초시 경계까지 총 7.6 km 입니다.
- 노선별 연장 및 소요사업비는

- ① 한전 변전소 - 노학동 사무소 : 0.5 km , 2,600 백만원
- ② 척산 진입로 : 3.0 km , 11,300
- ③ 척산3거리 - 한화 4거리 : 2.0 km , 기 시행
- ④ 한화4거리 - 속초시 경계 : 전교부에서 실시설계중

- 우리시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노선은 ①구간과 ②구간으로 소요사업비는 13,900 백만원입니다. 당초 계획은 '97 - '98년도에 도로확장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지중화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시다만 우리시의 예산사정으로 '9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본 구간 도로확장사업이 불가피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.
-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도로확장사업은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순수 시비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우리시에서는 본 구간 도로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한전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지방양여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양여금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본 구간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본 구간 도로확장사업사업 추진으로 날로 급증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